

군포시의회 공고 제 2021 - 24호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신금자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39,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js9695@korea.kr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신금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1. 8. .

발 의 자 : 신금자, 성복임, 장경민,
이건행, 홍경호, 이길호,
이희재, 김귀근, 이우천

1. 제안이유

-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 나.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3조~제4조)
- 다.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6조)
- 라. 비밀준수 의무 및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안 제9조~제10조)

3.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군포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이하 “노인학대 예방 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노인학대 예방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한 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한 자원 조달 방법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노인학대 예방 교육)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홍보)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으며, 그 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관련 정보의 제공)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등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노

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등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절대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